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3,640,399	7,609,212
일반회계	229,570,150	6,887,105
특별회계	24,070,249	722,107
기타특별회계	24,070,249	722,10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44,133	46,324
수질개선특별회계	11,055,616	331,6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66,600	25,998
의료급여특별회계	220,500	6,61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315,065	69,452
주택사업특별회계	824,953	24,749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70,539	11,116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2,608,300	78,24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98,153	20,945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350,000	100,500
기반시설특별회계	216,390	6,49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18,57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